

● 중소기업부공고제2024-243호

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,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. 또한,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“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”를 명시함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중소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- 전자우편 : kudos@korea.kr

- 팩스 : 044-204-7369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(044) 204 - 7360, 전자우편 kudos@korea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이유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제4조제2항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, 관련 민원 처리기간도 타 부처와 유사한 기간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. 또한,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하여 장기간 미활동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
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2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7일”을 “즉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